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9. 6.20] [법률 제 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은 재외동포(재외동포)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2 조 (정의) 이 법에서 “재외동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(영주권)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(이하 “재외국민”이라 한다)
2.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) 또는 그 직계비속(직계비속)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외국국적동포”라 한다)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3 조 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외국민과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10 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(이하 “재외동포체류자격”이라 한다)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4조 (정부의 책무)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5조 (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)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 1 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 호나 제 2 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 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직계존속(직계존속)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(이중국적자)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 7499 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 12 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 세가 되는 해의 1 월 1 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
2.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

3. 대한민국의 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,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법무부장관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6 조 (국내거소신고)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(거소)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(이하 “사무소장”이라 한다)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(이하 “출장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(신거소)가 소재한 시·군·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·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·군·구의 장에게, 시·군·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, 첨부 서류,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7 조 (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) 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 6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.

1. 재외국민: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

2. 외국국적동포: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

② 제 1 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.

1. 국내거소신고번호

2. 성명

3. 성별

4. 생년월일

5. 국적

6. 거주국

7.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

③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·훼손(훼손)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시·군·구의 장은 제 6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19>

⑥ 제 1 항과 제 4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제 5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8 조 (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)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9 조 (주민등록 등과의 관계)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0 조 (출입국과 체류)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 년까지로 한다. <개정 2008.12.19>

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 5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0 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.
-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(이전신고)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1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별 제 36 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-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1 조 (부동산거래 등)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「외국인토지법」 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·보유·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「외국인토지법」 제 4 조제 1 항,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(명의신탁) 약정(약정)에 따라 명의수탁자(명의수탁자) 명의(명의)로登記하거나登記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(물권)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 1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실명(실명)으로登記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2 조 (금융거래)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·적금의 가입, 이율의 적용,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「외국환거래법」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「외국환거래법」 제 18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3 조 (외국환거래)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「외국환거래법」 제 15 조와 제 17 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.

1.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
2.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(수입)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4 조 (건강보험)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 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5 조 삭제 <2000.12.30>

제 16 조 (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 외국국적동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7 조 (과태료) ① 제 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 8 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.

④ 삭제 <2008.12.19>

⑤ 삭제 <2008.12.19>

⑥ 삭제 <2008.12.19>

[전문개정 2008.3.14]

부칙 <제 8896 호,2008.3.14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 9140 호,2008.12.19>

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